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18349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29조,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18349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3. 9 선고 99나60701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축AAAAAA동조합중앙회

【피고,상고인】 유BA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CA)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3. 9. 선고 99나6070 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EA상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5. 8. 16.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수입거래약정과 이에 터잡아 한도액을 미화 30만 달러로 하고, 거래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외화표시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한도거래약정(이하 '제1차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 외국환,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등의 부채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연대보증하되, 보증한도를 미화 45만 달러로 하고, 보증기간은 정하지 아니하되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여신한도액 증액요청에 따라 1996. 6.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기존의 한도액인 미화 30만 달러에 미화 120만 달러를 추가하여 그 한도액을 미화 150만 달러로 증액하는 외화표시지급보증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여신한도를 미화 150만 달러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서(이하 '제2차 거래약정'이라고 한다)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송FA, 소외 조DA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미화 195만 달러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7. 6. 23. 이 사건 제2차 거래약정의 기간을 1998. 6. 22.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제3차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보증계약의 피보증채무는 제1차 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한정되고, 원고와 소외 회사가 1996. 6. 22. 거래한도액과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여 새로운 제2차 거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제1차 거래약정은 폐기되어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종료된 것이어서 1997. 7. 14. 이후에 개설된 수입신용장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1차 거래약정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수입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여신으로 처리하게 될 채권의 한도액 및 거래기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근보증계약은 피보증채무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로, 그

한도액을 미화 45만 달러로, 보증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제2차 거래약정은 기존의 수입거래약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여신 및 지급보증 한도액만을 증액하여 추가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제1차 거래약정의 기간을 제2차와 제3차 거래약정으로 순차 갱신하면서 보증인인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서 연장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보증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을 정함이 없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포괄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인 경우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과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판단관계, 그 밖에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2000. 3. 28. 선고 99다323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1995. 8. 16. 체결된 수입거래약정은 수입거래에 있어 당사자의 일반적인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한 기본약정으로서 이와 동시에 체결된 외화표시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한도거래약정과 일체를 이루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고, 피고들은 기본약정인 수입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거래한도액을 미화 30만 달러로, 거래기간을 1년(1995. 8. 15.부터 1996. 8. 15.까지)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제1차 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보증계약의 보증한도액은 제1차 거래약정의 거래한도액 미화 3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수채무 일체를 포함시켜 미화 45만 달러로 정하여진 점, 이 사건 근보증계약 이전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기간에 대하여 부동문자로 "가.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은 서면에 의하여 이 보증약정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 "나. 19 년 월 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위 나.항에 특정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나.항이 삭제되지도 아니한 점, 원고는 제1차 거래약정의 기간이 종료되기에 앞서 1996. 6.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거래한도액을 미화 150만 달러로 증액하는 제2차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송FA, 조DA을 새로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그들과 사이에 제2차 거래약정의 거래한도액 미화 15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수채무 일체를 포함시켜 미화 195만 달러를 보증한도액으로 정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제2차 거래약정의 기간이 종료되자 1997. 6. 23. 그 거래기간을 1998. 6. 2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제3차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도 피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한정근보증서가 아닌 포괄근보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그 보증기간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근보증계약 당시 피고들의 의사는 제1차 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만을 보증하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보증기간도 제1차 거래약정의 거래기간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2차 및 제3차 거래약정은 거래한도액과 연대보증인을 달리하는 새로운 약정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보증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제2차 및 제3차 거래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피고들이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근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계약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유지담